

애니홈종합보험 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 가입자격

-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 소유자 및 세입자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특성에 따라 회사의 인수지침에 의해 보험가입 또는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 이 보험의 재산손해담보조항의 가입대상 물건(보험의 목적)은 주택(건물) 및 주택구내의 가재에 한정하며, 배상책임담보조항의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중인 친족 및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 자녀를 말합니다.
- 이 상품의 보험기간(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통상 1년 또는 3년이며, 보험료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보험료분납 특별약관에 따라 분할 납입이 가능합니다.
-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 보험이므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 보장의 종류 및 보험금지급사유

보장명		보험금 지급사유
기본계약	재산손해	보험에 가입한 물건(보험 목적)이 우연한 사고(화재, 폭발 등)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본계약	가정일상생활배상책임	본인/배우자/자녀 등이 주거하는 주택과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손해 및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본계약	배관, 유리 파손	주택의 배관파열, 누수 또는 건물에 부착된 유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선택계약	실화배상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선택계약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 고장이 발생하여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함으로써 발생한 수리비용
선택계약	가재 도난손해	주택구내의 가재(보험목적)가 절도 또는 강도로 인해 도난, 파손손해를 입은 경우
선택계약	귀중품 등 도난손해	주택구내에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귀중품 등이 절도 또는 강도로 인해 도난, 파손손해를 입은 경우
선택계약	임차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임차한 주택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그 주택의 권리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선택계약	신체손해배상책임 (특수건물)	특수건물에서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인명피해가 발생시 과실여부 상관없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선택계약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수건물)	특수건물에서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재물피해가 발생시 과실여부 상관없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선택계약	지진위험 특별약관 (실손보상)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사고당 100만원 공제)

※ 「주택」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말합니다.

□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재산손해 보험금

-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건물의 가액은 재조달가액(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그러나 지급보험금은 피해재산의 수리 또는 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곳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재조달가액이 아닌 시가(감가상각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배상책임 보험금

-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대물 배상책임」의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며, 「대물 배상책임」의 손해액에서 2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 「대인 배상책임」은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타 담보 보험금

- 각 특별약관의 「지급보험금의 계산」 또는 「보험금의 지급한도」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부터 해당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손해담보조항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예시]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 보험의 목적인 가재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 망실 또는 분실 손해
- 도난손해(단, 가재는 가재도난손해특별약관, 귀중품 등은 귀중품 등 도난손해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는 담보됩니다.)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 배상책임담보조항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예시]

-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타인

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단, 실화(대물)배상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는 담보됩니다.)

-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임차자배상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증권에 기재한 부동산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담보됩니다.)

○ 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특별약관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예시]

- . 보험효력개시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 .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 손해
- .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 .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에서 생긴 손해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 예시

□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회사가 대표적으로 정하는 가입조건에 따른 보험료 예시

- 가입조건 : 보험기간 1년, 아파트

(단위: 원)

구분	담보	가입금액	영업보험료
담보 구성	재물손해 - 건물	3억	18,300
	재물손해 - 가재	1억	5,700
	급배수설비누출손해(건물)	500만	9,470
	급배수설비누출손해(가재)	500만	3,850
	건물부착유리손해	100만	27,900
	가정일상생활배상책임	1억	115,450
	가전제품고장수리비	연간 100만	13,080
	도난손해(가재)	3백만	5,040
	도난손해(귀중품)	2백만	3,360
	실화배상책임	5억	4,110
계 (일시납)			206,260

※ 상기 보험료는 요율 변동 및 보험가입조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5. 기타 알아 두실 사항

Q1) 재조달가액은 무엇인가요?

A1) 통상 건물의 가액은 시가, 즉 신축가액에서 사용연수에 해당하는 적정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평가된 가치를 말하는 반면, 재조달가액은 동일한 주택을 새로 건축하는데 소요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이 상품은 손해발생 시에 건물은 재조달가, 가재는 시가로 보상합니다.

Q2)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은 계약 후 사고발생시 바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자기부담금은 있나요?

A2)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은 보험효력개시 60일 이후부터 보장되고 자기부담금은 2만원입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우는 대기기간(60일, 30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배관 파열, 누수를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보일러 배관 파열로 인한 누수도 보상이 되나요?

A3) 급수관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관, 배수관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관으로 보일러의 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